

2 제6차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

- 제9조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 간주처리 내역 및 사유

○ 제6차 : 2건, 370백만원

- 청년성장프로젝트(170백만원) : '24.2월 고용노동부 신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4.6월 하반기 사업 수행을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간주처리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2497(2024. 6. 27.)호

** 사업내용 : 신입직원 직장적응을 위한 온보딩 및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개선교육 등

- 도시제조업 지원(200백만원) : 종로구 창신동 일대를 중심으로 의류봉제 집적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간주처리 요청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1007(2024.7.12.)호

붙임 : 간주처리 세부 내역 및 근거 서류(교부결정 통지 공문) 각 1부

○ 제6차 간주처리 세부 내역

- 세입예산

(단위:천원)

세입과목	기정예산	금회간주	변경예산
511-01 (국고보조금)	170,000	170,000	340,000
511-03 (기금)	2,033,700	200,000	2,233,700

- 세출예산

(단위:천원)

예산과목				기정예산	금회간주	변경예산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소 계				(×170,000) 545,000	(×370,000) 370,000	(×540,000) 915,000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일자리 연계 및 취업지원	청년성장 프로젝트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170,000) 170,000	(×170,000) 170,000	(×340,000) 340,000
뷰티패션 산업 활성화	뷰티패션 활성화 및 제조산업 혁신기반 마련	도시 제조업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 375,000	(×200,000) 200,000	(×200,000) 575,000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수신 서울특별시(일자리정책과장)

(경유)

제목 2024년 청년성장프로젝트 국고보조금(2차) 교부 알림

- 관련: 2024년 청년성장프로젝트 국고보조금 2차 교부 신청 안내 및 협조 요청
(지역협력과-2256, 2024. 6. 11.)
- 귀 기관에서 신청한 2024년 청년성장프로젝트 국고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교부하였으니 교부조건과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집행·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서 및 보조금 교부 조건 1부, 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주무관

홍미선

팀장

최선영

지역협력과 전결 2024. 6. 25.

장

양동철

협조자

시행 지역협력과-2497

(2024. 6. 27.)

접수 일자리정책과-10645

(2024. 6. 27.)

우 0454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동 1 장교빌딩) 16층 / moel.go.kr/seoul

전화 02-2004-7968 /전송 02-6915-4011 / hongmi83@korea.kr / 비공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서울시장

1.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니 붙임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명: 청년성장프로젝트

보조사업자: 서울시장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3. ~ 2024. 12.

○ 사업규모: 340,000천원

(단위: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고용부)	지방비(지자체)
청년성장프로젝트	340,000	340,000	0

○ 사업내용: 미취업 청년 등의 구직단념 이행 예방(청년카페 운영), 기업 내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등 신규 입직 청년의 직장 적응 지원(직장 적응 지원)

교부목적: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예산과목: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0	1000	1051	305	330-01
사회복지	고용	고용창출	청년진로및취업지원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교부결정내역(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청년성장 프로젝트	340,000	170,000	170,000	170,000	0	-

- 1)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4년 6월 2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청년센터 운영」 사업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 하여야 합니다.
6.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에는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7.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이하 “우리부”라 합니다)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 사업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 위반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주 이내에 연차사업결과보고서 및 관련 지출증빙자료를 첨부한 연차사업정산보고서를 우리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또는 사업의 폐지 승인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국고보조금과 매칭하는 사업의 경우 자부담 비용을 우선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액(불인정금액 제외) 기준으로 국고/자부담금 매칭 비율 미만으로 자부담금을 집행하는 경우, 이에 미달하는 자부담금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환수하여야 합니다.(별도 세입조치)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 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7.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 회계연도 제6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알림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에 대해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송부합니다.

붙임 2024 회계연도 제6차 간주처리 내역 1부. 끝.

서울특별시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재난대응과장, 예방과장, 민방위담당관, 친환경건물과장, 문화예술과장, 체육정책과장, 체육진흥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감염병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도시철도과장, 버스정책과장, 택시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농수산유통과장, 가족담당관, 다문화담당관, **일자리정책과장**, **뷰티패션산업과장**, 치수안전과장, 재난안전정책과장, 보행환경개선과장, 도로시설과장, 주택정책과장, 공공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주거정비과장, 공원조성과장, 서울특별시회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

주무관 노현지 예산총괄팀장 최은정 예산담당관 08/19 문혁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9745 (2024. 8. 19.) 접수 치수안전과-15182 (2024. 8. 20.)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15 /전송 02-768-8824 / hjro@seoul.go.kr / 부분공개(5)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 2024년 1차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안내
(서울특별시 종로구)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서울특별시 뷰티패션산업과-4137(2024.4.26.)호와 관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보조금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차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

(단위 : 백만원)

시도	시군구	사업유형	교부금액	입금계좌
서울	종로구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200	신한 100-033-2221045 (서울특별시)

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 종로구청장(지역경제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주무관 차우진 행정사무관 남궁은영 지역상권과 전결 2024. 7. 12.
장 김윤우

협조자

시행 지역상권과-1007 (2024. 7. 12.) 접수 뷰티패션산업과-472 (2024. 7. 12.)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80(어진동), 중소기업부 / www.mss.go.kr

전화 044-204-7883 /전송 044-204-7879 / dnrjs929@korea.kr / 비공개